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72,930,980	35,187,929
일반회계	1,063,595,842	31,907,875
특별회계	109,335,138	3,280,054
공기업특별회계	96,611,925	2,898,358
상수도사업	37,535,583	1,126,067
하수도사업	59,076,342	1,772,290
기타특별회계	12,723,213	381,696
의료급여기금	2,739,534	82,1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07,500	9,225
밀양담주변지역지원	245,628	7,3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7,371	4,421
수질개선관리	5,395,180	161,855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000	90,000
공공폐수처리시설	888,000	26,6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587,427천 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9,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